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8-75호
- 예고기간 : 2008. 4. 17 ~ 5. 7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02-2110-7387)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008. 3. 21 공포, 법률 제896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법 제11조) 및 시행일(부칙 제4조)을 결정하는 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래 지침으로 규정하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단위로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음.
- (2)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제2조)을 사용하여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해당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규정함.

다.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 를 제외(별표 4중 '18세 미만인 자' 란의 '사용금지직종' 란 제6호) '양조의 업무' 는 1954년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조문변경 없이 사용금지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급속한 산업구조 변경 등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선진외국도 양조업에의 연소자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제외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8-54호
- 예고기간 : 2008. 4. 11 ~ 5. 1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과(02-2110-6228)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계획관리지역내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허용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지등에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2)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지 않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법 률 : 제9046호
- 공포일자 : 2008. 3. 28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10-809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oct.go.kr)

◎ 개정이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안 제9조제2항)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으로 명료화 함.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한(안 제16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안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마.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의 제한규정을 완화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부 령 : 제9호
- 공포일자 : 2008. 4. 17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10-5228)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공포·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경형승용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01

- 수전설비 1,500kW, 비상발전설비 1,100kW인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 전기공사기사 또는 경력이 많은 기능사 자격자는 동 전기설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지

- 귀사의 경우에는 전기설비용량이 수전설비와 비상발전설비를 합하여 2,600kW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12 제3호(2)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입니다.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분야기능사 자격소지자가 경력이 많은 경우라도 동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10)

02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른지역의 설계업체(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별표2]에 대행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대행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4. 28)

03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주)이 동 시설물(위탁받은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재 위탁할 수 있는지
- 동 설비에 대한 신고인이 주택관리공단(주)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공단(주) 소속의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상가관리소장도 가능한지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설물관리 등을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주)의 대표이사는 신고인이 되어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또는 하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5. 04)

04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 전기공사업체에서 건축물의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12와 같으며,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가 전기분야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경력확인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9)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

01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경우, 전기설계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8조제2항의 별표1“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공사비 2,000만원까지의 요율은 기본설계(3.79%), 실시설계(11.38%)이나,
-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02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경우, 전기설계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8조제2항의 별표1“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공사비 2,000만원까지의 요율은 기본설계(3.79%), 실시설계(11.38%)이나,
-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03

산업자원부고시 제18조 관련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따른 설계요율이 2,000만원까지는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1,000만원미만일 경우에 실시설계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18조 제2항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의하면 공사비 2,000만원까지 실시설계요율은 11.38%를 적용하므로,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실시 설계 요율은 11.38%를 적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03)

04

•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사 해당분야 제한에 대하여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 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 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설계 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설계업자 선정은 동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중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 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2006-69호 중 설계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를 전기분야 중 어느 하나로 한정지를 필요는 없으며,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중 세부평가방법(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25)

생활속 법령상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을 몰수해도 무방한가?



글 _ 박종복 변호사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지급을 최고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을 몰수해도 무방한가?

A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인 귀하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민법은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한편 일반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544조)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나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대법원은 중도금 지급기일 경과후 단 1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있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나 적어도 3~4일 내지 1주일 정도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받은 계약금은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만약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그 금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민법 제398조)이 있으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원을 분명히 몰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

영도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이렇게...

글 | 정태화 세무사

1.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1) 교부시기**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2)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2.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왕 성실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 성실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